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21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0년 10월 2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박도식

가. 개정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재설계에 따라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기준 및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,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구민복지증진 및 「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」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개정내용

- (1) 안 제2조에서 행정기구 재설계에 따른 정원은 3개 부서(과) 신설 및 총액인건비제를 반영하여 현 정원 1249명 대비 11명이 증가된 1260명을 총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도 집행기관의 정원 1220명을 11명이 증가된 1231명으로 규정

- (2) 안 [별표 1]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에서 2015년까지 일반직 비율은 78% 이상으로 기능직, 고용직 비율은 20%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함에 따라 2012년까지 기능직 퇴직예정 인원인 29명을 감안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비율을 조정한 결과 일반직 74% 이상에서 2%가 증가된 76%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, 고용직 24% 이내를 2% 감소된 22% 로 조정함으로서 일반직은 40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29명을 축소하여 총 11명의 정원을 증원
- (3) 안 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증원된 11명중 8명은 구 본청, 3명은 보건소 인원으로 조정하고 증원된 일반직 5급 1명은 도시관리국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토목 5급의 도시계획과장으로 보임
- (4)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에서는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29명은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을 보며 증원되는 일반직 40명 중 29명은 기능직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충원하는 것으로 규정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한 구민 중심의 행정기구 재개편에 따라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, 조정하여 보건, 복지 업무의 증가, 육아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인력난 대처와 그 밖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직관리기준과 총액인건비 산정결과통보에 따라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8. 기타사항 : 없음